

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테일오피스텔 1828호)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www.assi.or.kr E-Mail : assi1337@naver.com 담당 : 박용복 국장

문서번호 시험 2020 - 282호

시행일자 2020. 7. 28.

수 신 국토교통부장관

참 조 건설안전과장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 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1. 국가시설물의 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입법 예고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우리 협회 의견을 제출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협회의견 1부.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번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의견
	일부개정령(안)	별점	협회(안)	별점	
3.12	가)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0	가)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기준과 다르게 하여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0	(1)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시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우불량’으로 처분시 0.7점 감점하고, ‘불량’ 처분시 0.5점 감점, ‘미흡’ 처분시 0.3점을 감점토록 세분화 되어있음. (2)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은 일시적으로 점검시점에 현장을 나가 확인하는 절차로 현장에 상시근무하는 사업관리자와 시공자에 비해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제한적임.
			나)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0.7	
	나)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0	다)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0	(3) 대체로 한 개의 건설안전전문기관이 1년에 수십 개 현장을 점검하게 되므로 사고시 점검까지 책임을 물어 과도한 별점을 부과하면 대부분의 점검기관이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보임.
	다)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후 기한내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	라)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후 기한내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0.5	(4) 현재 국토부에서는 「시설물 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인 ‘건설안전점검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동법,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단체에게 주는 실적관리 등의 위임사무를 주고 있지 않은바,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시행령[별표8]의 별점관리기준에 의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먼저 인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